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67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서천호 · 김예지 · 김선교
정성국 · 추경호 · 임종득
백종헌 · 우재준 · 박덕흠
서지영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

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29조제1항제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차단조치”를 “차단조치 또는 해양폐기물의 수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조치)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1조(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u>차단조치</u> 3. ~ 7. (생 략)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차단조치 또는 해양폐기물의 수거</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